

서울특별시 빗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
일부개정조례안(1140)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!
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.동료 위원님 여러분!
우 미 경 의원입니다.
-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빗공해 방지 및 좋은빛
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
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-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- 이 개정안은 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라 어려운 법률
용어를 순화하는 등의 조문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조례 내용을
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.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
주시기를 바라며, 본 개정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아무쪼록
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-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